



의안번호	제48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0. 5. 8.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5. 8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개정이유(배경·필요성)

-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경제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(안 제8조)
 -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는 소유 재산 평가
- 나. 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(안 제9조)
 -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의 안내, 신청방법, 결과통지 및 기록·관리
- 다. 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(안 제10조)
 - 선정대리인의 임기, 비밀유지 의무, 우대사항 규정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1) 지방자치법 제22조
 - 2)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
 - 3)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대상아님
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가) 예고기간 : 2020. 3. 4. ~ 3. 23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세정과 (041-635-3637)

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9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청구등”이라 한다.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청구인등”이라 한다.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대리인”이라 한다.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

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세 무 과 장	허 원
	세 정 팀 장	이 래 운
	담 당 자	신 혜 영 (746-543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</u></p> <p>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청구등” 이라 한다.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 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청구인등” 이라 한다.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대리인” 이라 한다.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</p>

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

<신 설>

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
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
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
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
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
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
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
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
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
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
사법」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
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
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
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
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
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
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
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

제8조 (생략)

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해당사항 없음

나. 추계결과

- 해당사항 없음

세무과장 허원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청인등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이의신청인등의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 2.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
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
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
 5.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,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청인등"이라 한다)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
 2.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종합소득금액의 경우: 5천만원(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 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,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.
2.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(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)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. 다만,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가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
 - 나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
 - 다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
-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채납자 등"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.
-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, 대리인의 임기·위촉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1.]